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09
----------	-------

발의연월일 : 2025. 9. 9.

발 의 자 : 문진석 · 홍기원 · 김종민
김교홍 · 김문수 · 조인철
이정문 · 박수현 · 서미화
이재관 · 장종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퇴 후 계속 진료 활동을 희망하는 의사를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은퇴 후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정·고시할 수 있다”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니어의사 활용 체계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니어의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 중 60세 이상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니어의사를 활용하기 원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시니어의사를 연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u>지정·고시할 수 있다.</u>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 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생략) <u><신설></u> ⑤ (생략) <u><신설></u>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 ⑤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2(시니어의사 활용 체계 구축·운영)</u>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니어의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의사 중 60세 이상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니어의사를 활용하기 원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시니어의사를 연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